

대구지방법원 2018. 7. 19 선고 2018가단968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8. 7. 5

판 결 선고 2018. 7. 19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7, 26, 23, 24, 25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45㎡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을 철거하고, 위 선내 (ㄴ)부분 45㎡를 인도하고,
나. 2,372,589원과 2018. 6. 20.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 (ㄴ)부분 45㎡의 인도시까지 월 223,1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1의 가항(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) 및 피고는 원고에게 2,636,210원과 2018.6. 20.부터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7, 26, 23, 24, 25,
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45㎡[이하 '이 사건 선내(ㄴ)부분 : 이라고 한다]의
인도시까지 월 247,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4.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매수하여 2017.
7. 31. 소유권이 전등기 를 마친 소유권자이 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대구광역시 북구 C 지상에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 건 주택을 1978 .
1. 19.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. 그런데 피고 소유의 위 주택중 일부가 원고가 이 사건
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을 침범하고 있었다.
다. 2017. 8. 1.부터 2018 . 6. 19.까지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의 임료는 2,372,589원 상당이고,
2018. 6. 20.부터의 임료는 월 223,128원 상당이다.

[감정인 D은 2017. 8. 1.부터 2018. 6. 19.까지 임료로 2,636,210원, 2018. 6. 20. 이후의 임료로
월 247, 920원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선내(ㄴ)부분 45㎡를 포함한
50㎡에 대한 임료액이고(임료 감정서 3면 등),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
사건 선내 (ㄴ)부분 45㎡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추가로 5㎡ 를 더 점유하고 있다고 볼
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위 임료산정액의 90%(45㎡/50㎡)에 해당하는 2,372,589원(= 2,636,210x45㎡/50㎡) 및
223,128원(=247,920X45m750㎡)을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의 임료로 인정한다.]

[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내지 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측량 감정촉탁결과, 이

법원의 임료 감정축탁결과 중 일부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 소유의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하여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 45㎡를 점유하고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,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 지상의 피고 소유의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을 철거하고,위 선내 (ㄴ)부분을 인도하고,②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7. 8. 1.부터 2018. 6.19.까지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의 임료 상당액인 2,372,589원과 2018. 6. 20.부터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의 인도시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223,1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감정인 D이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구하고 있으나,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 D이 산정한 임료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선내 (ㄴ)부분의 임료로 상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).

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한다.

판사 남재현

별지